

보도시점 2026. 8. 7.(금) 15:00 (2026. 8. 7.(금) 석간)

고용노동부 청주시청, 폭염 대비 건설현장 긴급점검

-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및 폭염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등 지도

고용노동부 청주시청(지청장 연창석)은 7일 폭염중대경보 상황을 대비하여 옥외작업이 많은 건설현장을 방문해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관내 공사금액 800억 이상 대형 건설현장 21개소와 인근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체감온도가 높은 시간인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진행하였고, 주요 점검 사항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과 폭염 단계별 작업 중지 권고사항** 준수 여부이다.

* ①시원한 물, ②그늘(냉방장치), ③휴식(2시간마다 20분), ④보냉장구, ⑤119신고

**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주의보)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
(체감온도 35℃ 이상, 폭염경보)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 옥외작업 중지
(체감온도 38℃ 이상, 폭염중대경보)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청주시청은 이날 긴급점검을 포함하여 8. 3.(월)~8. 14.(금) 2주간을 폭염·밀폐공간 작업 산업재해 예방 집중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30개 사업장에 대한 점검·감독을 실시하는 한편, 폭염 중대재해 예방 안내문과 체감온도계와 같은 폭염예방 물품을 배포하는 등 사업장의 폭염 대응을 지도할 계획이다.

연창석 지청장은 “안전과 보전은 그 어떠한 것보다도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라고 강조하면서, “노동자가 폭염으로 인해 생명을 잃는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폭염안전 기본수칙을 비롯한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 상태를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청주시청 건설산재예방감독과	책임자	과 장	김문규 (043-279-5100)
		담당자	감독관	양일준 (043-279-5141)
			감독관	신건일 (043-279-5150)



오후 3시 이후 제공 예정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수칙



18개 모국어 번역본

사업주는 노동자가 체감온도 31℃ 이상 되는 작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해야 합니다.

온열질환 예방조치

- ✓ 작업장소에 온·습도계 비치하여 체감온도 측정 및 조치사항 기록
- ✓ 폭염작업 전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 알리기
- ✓ 작업장소 근처에 휴게시설(쉼터 및 그늘진 장소) 설치



체감온도 계산기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의무

- | | |
|-------------------|--|
| 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원하고 깨끗한 물 충분히 제공 |
| 냉방장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염작업 시 (이동식)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등 냉방·통풍장치 및 그늘막 설치 ✓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집중 시간대 노출 최소화 |
| 휴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감온도 31℃ 이상 폭염작업 시 적절한 휴식 ✓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
| 보냉장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각의류, 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 |
| 119 신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열질환자·의심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즉시 119 신고 ✓ 의식이 있는 경우 응급조치 후 증상 개선 없을 시 119 신고 |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권고

- | | |
|------------------------------|--|
|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주의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 |
| 체감온도 35℃ 이상
폭염경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더위 시간대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작업 중지 |
| 체감온도 38℃ 이상
폭염중대경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공단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민감군 관리

▶ 온열질환 민감군

- ✓ 폭염작업 신규배치자
- ✓ 과거 온열질환 경력자
- ✓ 고령자, 고혈압·당뇨 등의 질환이 있는 자



▶ 온열질환 민감군 관리방법

- ✓ 신규배치자 등 온열질환 민감군은 작업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작업시간을 단계적 증가
- ✓ 주기적으로 노동자 건강상태 확인
- ✓ 폭염작업 전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 주지
- ✓ 폭염작업 시간 단축, 휴식 시간 추가 배정

온열질환 응급조치 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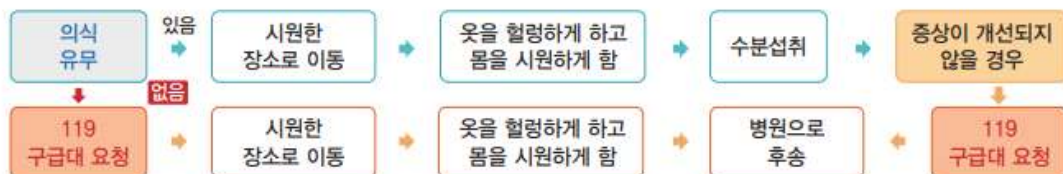
* 질병청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바로알기

▶ 온열질환 증상

- ✓ 평소보다 높은 체온, 땀을 많이 흘림, 어지러움, 메스꺼움, 근육 경련, 의식 저하

▶ 온열질환 응급조치 요령

- ✓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세요.
- ✓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에 시원한 물을 적셔 부채나 선풍기 등으로 몸을 식히세요.
- ✓ 시원한 물을 섭취하여 수분을 보충하세요. ※ 의식이 없을 경우에는 수분섭취 절대 금지
- ✓ 휴식을 취하거나 의료적인 도움을 받으세요.



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

▶ 밀폐공간은 '질식사망 위험공간'입니다. 폭염 시 매우 위험합니다.

- ✓ 밀폐공간(탱크·저장용기의 내부, 맨홀 등)은 기온 상승 시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 중독 위험이 크게 증가하여 '한 번의 호흡으로도 사망할 수 있는 위험 장소'입니다.

반드시 「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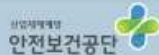
- ①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 ② 작업전·작업중 지속적인 환기
- ③ 적정공기가 아닌 경우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 착용

※ 질식사고 예방 핵심 안전보건규칙 개정('25.12.1) 주요내용

- ①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장비 지급의무 명시 ② 측정결과 기록·보존 ③ 사고 발생 시 119 우선 신고 ④ 밀폐공간 위험성 숙지·교육 강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
안전보건공단



질병관리청